

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
【2024. 1. 31.(수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
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년 1월 31일
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4 - 6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4년 1월 16일
- 라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
2. 제안이유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인용 조문 개정(안 제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 12. 13.~2024. 1. 2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-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(안 제1조)

- (현행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(개정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¹⁾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(시행 '22.12.1.)됨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기존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음.

이에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제명을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 개정

참 고

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

□ 2023년 예산액 및 집행액

(단위 : 천원)

예산 편성액			예산 집행액			예산 집행잔액		
계	시비	구비	계	시비	구비	계	시비	구비
129,105	79,105	50,000	114,450	79,105	35,345	14,655	0	14,655

☞ 2024년 예산액: 시비(미정, 2월중 결정교부) 구비 50,000천원

□ 안전취약가구 점검·정비 실적

<안전취약가구 유형별 지원 내역>

(단위 : 가구)

구분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	장애인	홀몸어르신	한부모
합계	1,221	69	112	479	44

<분야별 세부내용>

(금액단위 : 천원)

점검·정비분야	전기	가스	소방	보일러	기타
점검·정비 가구수	360	400	400	265	500
점검·정비업체 (지역)	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 (영등포구)	반석산업 (영등포구)		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강서양천구회 (강서구회)	(주)세이브올 (서초구)
점검·정비내용	-안전점검 (누전차단기, 노후콘센트교체 등) -멀티탭 배부	- 가스타이머 설치 - 노후 퓨즈복 교체 - 가스안전점검	- 단독형 화재(연기) 감지기 설치	- 보일러 안전 점검 (연통, 배관 등)	- 간이 소화기, 구조손수건, 구급함 등 배부
사업비(시비·구비 합)	27,650	35,600		19,500	31,700

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0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“주택용소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